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청소년가족부로 개편〉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20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한규의원 등 27인
2. 발의연월일 : 2025. 07. 07.
3. 회부연월일 : 2025. 07. 0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그런데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안 제42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6호, 제39조제1항 및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 15. (생략) <u>16. 여성가족부</u> 17. ~ 19. (생략) ②·③ (생략)	제26조(행정각부) ① ----- -----. 1. ~ 15. (현행과 같음) <u>16. 성평등가족청소년부</u> 17. ~ 1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자활지원· <u>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u> ·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③ (생략)	제39조(보건복지부) ① ----- ----- -- <u>사회보장·노인</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여성가족부) <u>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u>	제42조(<u>성평등가족청소년부</u>) <u>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은 성평등 정책의-----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u> ----- -----

현행	개정안
다.	-----.

행정기관의 명칭은 그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표현하는 형태로 정해지는 것이 국민의 이용 편의나 책임행정 제고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여성가족부의 경우 「정부조직법」 및 「여성가족부 직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에 관한 사무 외에도 양성평등정책,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 등을 그 소관 업무로 하고 있어, 현재의 기관 명칭은 여성·가족에 관한 업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여지를 줄 수 있고, 대외 영문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명칭의 통일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청소년’을 명시하여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함으로써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을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 보호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사회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 정책

의 주관 행정기관을 분명히 하는 등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사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정책 주관부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고, 아동 관련 정책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예를 들어 해당 아동의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긴급복지·소아의료 지원 등과 연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유의 사회보장, 보건, 복지증진 등 복지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통합 수행에 따른 효율성과 기능의 이관 시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는 취약아동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 외에 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가 긴밀히 연계·제공될 필요가 있고, 아동 정책 추진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정책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증가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39

【복지대상별 기능 수행체계 변천 연혁】

연도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족	여성	노인
	교육 (유치원)	보육 (어린이집)					
'50~'81			복지부 (‘50~현재) 복지부				복지부 (‘80~현재) 복지부
'81~'88	내무부 (‘81~91)			문교부 (‘83~'88)			
'88~'98	교육부	복지부 (‘91~'04)		체육부 (‘88~'98)		제2정무 장관실 (‘88~'98)	
'98~'01				청소년보호 위원회 (‘98~'05)		여성특별 위원회실 (‘98~'01)	
'01~'05		복지부 (‘00~'05)			여성부 (‘01~'05)		
'05~'08		여성가족부 (‘04~'08)		국가청소년 위원회 (‘05~'08)	여성가족부 (‘05~'08)	여성가족부 (‘05~'08)	
'08~'10		복지부 (‘08~현재)		복지부 (‘08~'10)	복지부 (‘08~'10)	여성부 (‘08~'10)	
'10~'24	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4~현재	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10~현재)	여성가족부 (‘10~현재)	여성가족부 (‘10~현재)	복지부

자료: 행정안전부